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3. 2. 13.] [환경부고시 제2023-25호, 2023. 2. 13., 일부개정]

환경부(생활환경과), 044-201-6796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음・진동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, 피해사례의 조사・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층간소음"이란 공동주택의 위·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.
- 2. "전문기관"이란 층간소음의 측정, 피해사례의 조사·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.
- 3. "공동주택"이란「주택법」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을 말한다.
- 4. "관리주체"란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.
- 5. "신청세대"란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신청한 입주자 및 사용자(이하 "입주자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- 6. "상대세대"란 신청세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.
- 7. 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.
- 8. "전화상담"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.
- 9. "방문상담"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·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.
- 10. "소음측정"이란 전문기관이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1. "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"이란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구축·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.
- 12. "피해사례조사"란 전문기관이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의 거주환경,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13. "피해조정지원"이란 전문기관이 피해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층간소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세대 와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고시는「주택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4조(전문기관의 역할) 전문기관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, 피해사례의 조사·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(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)가 이를 우선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.
- **제5조(전화상담)** ①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.
 - 1.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
 - 2. 층간소음 관련 규정
 -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화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상담을 신청받을 수 있다.
 - 1.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
 - 2. 공동주택 현황
 - 3. 층간소음 현황
 - ③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보관할 수 있다. 또한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·보관할 수 있다.
- 제6조(방문상담) ① 입주자등은 제5조제2항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상담 신청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방문상담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.
 -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,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
 - 2.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
 - ⑤ 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
 - 2. 공동주택 현황
 - 3. 층간소음 현황
 - 4.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
- ⑥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제7조(소음측정)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충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충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충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소음측정을 실시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신청세대가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 - ③ 전문기관은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신청세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
 - ·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. 다만,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
 - 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.
 -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 신청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.
 - 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
 - 1.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
 - 2.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・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
 - 3.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
 - 4. 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 - 5. 제3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**제8조(소음측정방법)** ① 소음측정은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」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활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
 - 2.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
 - 3. 소음측정 시간을 초과하여 측정한 시간대
 - ③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에 「소음・진동 공정시험기준」중「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」의 배경소음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한다. 이 경우 배경소음은 제2항을 제외한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평균 배경소음을 말한다.
 - ④ 전문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녹음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조치를 한다.

부칙 <제2023-25호,2023.2.13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	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									
신 청 인	①공동주택명									
	②관리주체명			③대표자 성 명		④직위				
	⑤연락처			⑥전자우편	1(E-mail)					
세	⑦신청세대	성 명			연락처					
대		주 소								
정	⑧상대세대	성 명			연락처					
基		주 소								
민 원	⑨소음유형									
70 部 勢	⑩피해기간 및 내용									

「충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제6조제4항에 따라 충간소음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관리주체 (서명 또는 인)

신청세대 (서명 또는 인)

상대세대 (서명 또는 인)

총간소음 전문기관의 장 귀하

[구비서류]

- 1. 충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1부.
- 2. 사업자동록증 1부.

비고: '충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'는 붙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[불 임]

충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									
	중재주체	□ 관리주체	□ 충경	간소음 관리위	원회	□ 기타()	
①기본정보	중재상담자			연 락 처					
	중재요청일			중재일자					
②세대정보	신청세대 성 명			거주위치		퇑	호		
2011 41 73 F	상대세대 성 명			거주위치		동	호		
	소음유형								
③민원현황	피해기간								
@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피해내용								
	요구사항								
④생활형태	신청세대								
(E) (8 18 18 19 19	상대세대								
⑤중재내·용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								
접수번호				상담일자				
이번기니	성 명			연 락 처				
기본정보	주 소							
7570	공동주택명			충간소음 관리위원회	있음 	없음		
공동주택 일반현황	건 설 사			사업승인일				
8554	슬래브두께		mm	구조	□ 벽식 [□ 기타(] 기둥식)		
신청 내용								
	피해기간			피해내용				
	주 소음유형			주 소음발생 시간대				
상담 내용	분쟁 등 유형			생활형태				
요청사항								
조정방안								
	「충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제6조제6항에 따른 충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입니다.							
(작성자) 직위: 성명:								
		년	월	일				
	층 간 소 음 전 문 기 관 장							
비고 : 본 결과서는 충간소음과 관련하여 중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목적 외								
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.								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별지 제3호서식]

	충간소음 측정 신청서									
21	①성 명			②연락처						
신청	③전자우편(E-mail)			④공동주택명						
인	⑤주 소				-					
방 문	⑥방문상담일									
상 담	⑦방문상담 후 소음발생현황									
민 원	⑧주소음원 및 유형									
현 황	⑨소음발생 시간대									
	「충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1항에 따라 충간소음 측정을 신청합니다.									
		년	욀	일						
				신청인	(시명	또는 인)				
				층간소음	· 전문기관의	장 귀하				

[구비서류]

1. 충간소음 발생일지 1부.

비고 : '충간소음 발생일지'는 불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[붙 임]

	충간소음	발생일지	
①성 명	(서명 또는 인)	②연락처	
③주 소			

발생일시	소음유형	지속시간 또는 횟수
(예시 1) 2020. 2. 4. 15:25	아이 뛰는 소음	약 3분 지속
(예시 2) 2020. 2 4. 15:25 ~15:30	물건 떨어지는 소리	2회 발생

비고

- 1. 본 일지는 충간소음 측정 신청세대의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작성합니다.
- 2. 본 일지는 충간소음의 유형과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.
- 3. 본 일지는 소음측정 결과 분석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충간소음 측정동의서									
신	①성	명							
청 인	②주	소							
	③측정	기간			~				
소음	④분석	신청시간	※ 연속하여 측정되	어야 하며, 초	~ 대 24시간을 초	과할 수 없습니다.			
측 정	⑤측정	지점							
	⑥ 측 정	장비							
확인사항	(기충간소음을 정확하게 측정·분석하기 위해서는 충간소음 측정기간 동안 재실자와 내부 생활소음이 없어야 합니다. 만약,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생활소음이 측정될 경우에는 충간소음의 정확한 측정 및 분석이 어렵습니다. ※ 거주하는 시간대에는 충간소음 측정·분석이 불가능하며, 내부소음은 냉장고, 공기청정기, 기타 가전기기 등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. ※ 충간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원 발생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환 (⑧소음측정기의 설치 위치와 삼각대 하부의 고무 패킹을 확인했으며, 충간소음 측정기간 중에는 소음측정기의 접촉 및 임의 조작, 위치변경을 금지합니다. 사 ※ 충간소음 측정기간에 발생된 바닥재, 벽지 긁힘 등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이 했었고가 와소나다. 소유측정기는 금기의 개사으로 보신 그가 했소 사								
			1. 「충간소음 피해/ 충간소음 측정에 동		남담 등의 절차	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			
	년 월 일								
			-	신경		(서명 또는 인)			
				측기	성자	(서명 또는 인)			
					총가 스으	저무기과이 자 귀하			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별지 제5호서식]

충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

①충간소음의 정확한 측정·분석을 위해서는 충간소음 측정기간 동안 재실자와 안 내부에 생활소음이 없어야 하며,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내 ②충간소음 측정기간 중 출입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사항(년, 월, 일, 시, 분)을 사 본 출입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, 재실자가 있거나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(귀가 ~ 외출)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③외출시 외부소음 등을 반드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(예: 창문 닫기 등).

	귀가 시간		외출 시간		간	- 출입사항 동 작				
	년	월	일	시각	년	월	일	시각	조리사의 오	작성자
	20	03	3 4 15:25 20 03 4 15:35 (예시1) 15:25 귀가하여 가스 확인 후, 15:35 외출 항							
충	20	03	4	18:37	20	03	4	18:47	(예시2) 18:37 귀가하여 가방 정리 후, 18:47 외출함	
입										
사										
항										

위에 작성된 출입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「총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를 제출합니다.

(작성자 대표)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총간소음 전문기관의 장 귀하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별지 제6호서식]

충간소음 측정결과서									
접수번호				측정일자					
	성 명			연 락 처					
신청인	공동주택명	3							
	주 소		recessors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						
	측 정 자			분 석 자					
	측정기간			측정지점					
측정정보	측 정 기 (모 델 명))		측 정 기 (수 량)					
	주요소음								
	_	u	주간(06:0	0~22:00)	야간(22:00~06:00)				
	구 분		측정일시	측정결과 [dB(A)]	측정일시	측정결과 [dB(A)]			
	배경소음(L _{Aeq})								
측정결과		1분간 등가소음도 (L _{Aeq})							
7024	직접충격	1300							
	소음	최고소음도 (L _{Ames})							
	공기전달 소음	5분간 등가소음도 (L _{Aeq})							

「충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4항에 따른 충간소음 측정결과입니다.

(작성자) 직위: 성명:

년 월 일

층 간 소 음 전 문 기 관 장

비고: 본 결과서는 충간소음과 관련하여 중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